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권 고

제 목 광주 ○○○○○ 일반산업단지 도로 계획고 조정 재검토 필요

기 관 명 광주광역시, 광주광역시도시공사

내 용

광주광역시(○○○○)에서는 한국전력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○○○○○ 구축 등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첨단산업시설을 적극 육성 등을 목적으로 국토부 지정 ○○○○산업단지(이하 “국가산업단지”)는 2015. 6월 부터 2019. 6월 완료를 목표로 2016. 12월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하였고, 광주 ○○○○○ 일반산업단지(이하 “지방산업단지”)는 2016. 3월 부터 2021. 6월 완료를 목표로 2017. 12월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.

[표1] 광주 ○○○○○ 산업단지 조성공사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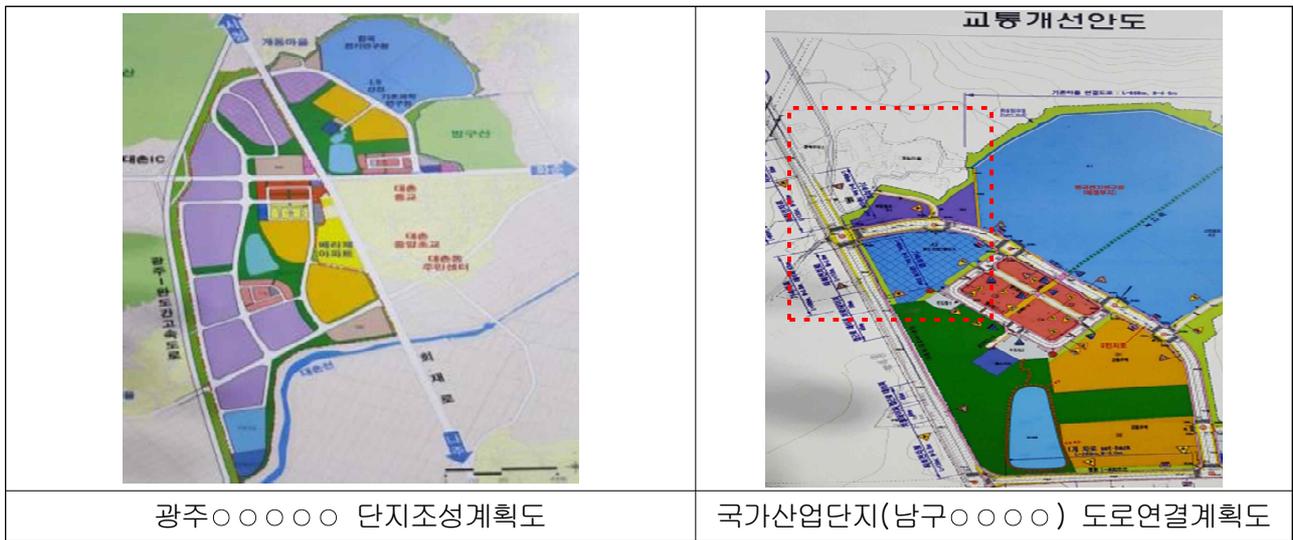
국가산업단지(○○○○산업단지)	지방산업단지(○○○○○ 일반산업단지)
● 위 치 : 광주광역시 남구 ○○·○○동 일원	● 위 치 : 광주광역시 남구 ○○·○○동 일원
● 면 적 : 486천㎡ (약15만평)	● 면 적 : 944천㎡ (약29만평)
● 총사업비 : 1,332억원(보상비 572, 공사비 583, 기타 177)	● 총사업비 : 2,978억원(보상1,162, 공사1,467, 기타349)
● 사업기간 : 2015 ~ 2019년	● 사업기간 : 2016 ~ 2021년
● 시 행 자 : 광주광역시도시공사(공영개발)	● 시 행 자 : 광주광역시도시공사(공영개발)

※ 자료근거 :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제출자료

‘광주 남구 ○○○○ 산업단지’로 조성중인 국가산업단지인 경우 2015. 7. 20. (주)○○(대표 ○○○)외 4개사와 용역계약 체결(1,757,000천원, 기간 2015. 7. 20.

~ 2017. 10. 28.1)하여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, 2016. 12. 6. ○○ 종합건설(주)(대표 ○○○)외 2개사와 공사계약 체결(11,045,397천원, 기간 2016. 12. 16. ~ 2018. 12. 15.)하여 ‘남구 ○○○○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(토목)’를 추진하고 있다.

[도면1] 광주 ○○○○ 산업단지 조성계획도



※ 광주광역시○○○○ 제출자료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」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부당감액 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게 공사 감독공무원,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시행 단계에서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 확인 등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 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55조 및 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 제6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,

1) 용역중지 기간 : 2016. 12. 20. ~ 2017. 8. 30. 잔여기간 30일

계약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등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, 설계변경도면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.

광주광역시○○○○에서는 ‘남구○○○○ 산업단지조성’과 관련하여 단지와 연결되어 있는 ○○마을²⁾이 국가산업단지 내 단지 계획고 대비 약 -1.8m~6.3m, ○○1-20호선(○○○)의 계획고 대비 약 -6.3m에 위치하고 있어 ○○○ 및 ○○○와 연결되는 주진출입로 설치 시 아래 [사진]과 같이 마을과 도로의 높은 단차로 인해 조망 장애, 마을 고립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마을대표 및 주민간의 3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, 산업단지 연결도로와 ○○○로의 기존 도로면의 약 3.4m를 낮추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며, 이에 따라 2017. 8. 22. 설계변경을 통해 약 1,266백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하여 ○○○로의 종단 계획고를 낮추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다.

[사진] ○○마을 주변 전경 및 종단 계획고 변경 현황



※ 자료근거 : 광주광역시 남구 ○○마을 현황조사(2017. 9. 25.)

2) ○○마을 현황 : 위치 : 광주시 남구 ○○동 000-0번지 일원 / 가옥수 : 30채, 인구 약 60명

이에 따라 금번 합동감사 기간 중 현지 조사를 실시한 바, ○○○는 주간 선도로로서 일일 교통량 60,912대(첨두시간 교통량 약 4,250대/hr)³⁾로 통행량이 빈번한 도로이며, 아래 [도면2]와 같이 ○○마을이 위치한 도로여건은 약 2km이상 직선도로의 종단경사가 2.2%~1.19%로 이어지는 종단 변곡점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바, ○○○의 현재 종단 경사(+1.49%) 지점으로 부터 도로를 낮추도록 계획(최대 단차 3.4m. 경사도 2.990%~1.435%)됨에 따라 과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 여건상 회재로 내리막 경사부에 ○○마을 진입로를 포함한 산업단지 4지 교차로가 형성되어 운전자의 종단 시거축소 및 정지거리 증가가 불가피한 상태이다.

또한 ○○○를 관통하는 마을 통로암거의 철거 및 도로 계획 여건상 내리막 구간에 교차로가 형성되어 동절기 미끄럼 발생 요소가 높아 횡단보도 이용자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될 소지가 있다.

더구나 ○○마을 주민이 제기한 ‘마을과 도로의 높은 단차로 인해 조망 장애, 마을 고립’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본선도로 높이에서 약 3.4m만을 일부 낮추는 것으로 실질적인 민원 해소 효과를 검증할 수 없으며, 산업단지 조성 이후에는 녹지 수목 및 신축된 건물 등으로 인해 조망권 확보 등을 해결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.

따라서 본선도로의 계획고 조정(설계변경)으로는 제기된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안전사고 위험 및 민원 재발 등이 우려됨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반영된 사업비 약 1,266백만원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교차로 개선

3) 2016년 광주광역시 교통기초조사 자료 근거 / (첨두시간) 8~9시 4,233대, 18~19시 4,252대

또는 입체교차로 등의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에 있다.

[도면2] ○○○ 종단선형 변경(계획고 변경) 종평면도



※ 자료근거 : 광주광역시○○○○ 제출자료

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, 광주광역시도시공사장은

[권고] ○○○의 종단 계획고 변경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및 민원 재발 방지 등을 고려한 대체 시설 마련을 재고하여 추가 반영된 사업비가 낭비되지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.